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31 발의연월일: 2021. 6. 28.

발 의 자: 김철민 • 이정문 • 민형배

서동용 • 안민석 • 이병훈

이원욱 · 김민철 · 권인숙

박상혁 • 유동수 • 고영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등 재해 대처계획의 수립의무와 함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피난 방법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에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만 부과되어 있고,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피난 방법"을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	
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	
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	
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	
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	
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u></u>
<u>피난 방법</u> , 그 밖에 비상시에	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	
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	
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u><신 설></u>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
	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
	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
	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
	<u>다.</u>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u>③</u> <u>제1항 및 제2항</u>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	
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	

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	
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